

제주더큰내일센터

2026년 4차 탐나는기업 모집공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청년의 가능성을 미래로 확장하고자 하는 도내·외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 6.
제주더큰내일센터장

□ 공고 개요

○ 공고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11기, 12기 취업트랙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모집대상

-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이하 ‘탐나는인재’)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도내·외 기업

○ 모집기간: 2026년 6월 29일 ~ 7월 26일(28일간)

○ 사업유형: 제주더큰내일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 실무 기반형 인턴십(주 5일, 계약직 채용)
* 분기별 1회 센터 출석

○ 모집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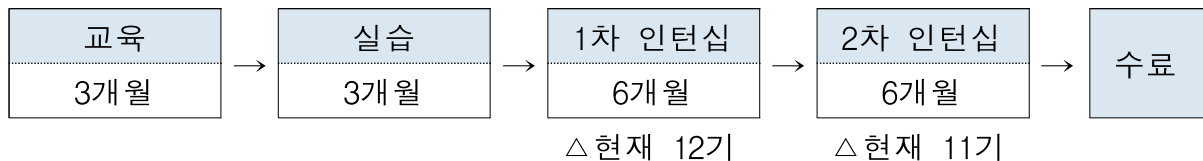
분야	기간	기업 역할	인재 역할	센터 지원금	기업 부담금
인턴십 (주 5일)	6개월	실무 기반 인턴십 운영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 수행	월 150만원 (기업에 지급) * 급여 先 지급, 지원금 後 정산	'26년 기준 월 급여 일부 1,030,990원 이상 (총 급여 2,530,990원 이상)

* 기업부담금: 채용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2026년 기준 월 2,530,990원 이상)을 참여자에게 선(先)지급하여야 하며, 본 센터는 정산내역 확인 후(後)지급합니다. 또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4대 보험(기업부담분) 등 기본급 외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 인턴십 기간

- 11기: 2차 인턴십(2026. 9. 1. ~ 2027. 2. 28., 6개월)
- 12기: 1차 인턴십(2026. 9. 1. ~ 2027. 2. 28., 6개월)
→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인턴십 시작일이 상이하더라도 종료일은 변동되지 않음



□ 세부 내용

○ 참여대상: 도내 · 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제한 기준」 필수 확인 (P.5 참조)

○ 탐나는인재 신분: 기업 소속 **계약직** 근로자이자 센터 소속 교육
훈련생

○ 운영기간: 6개월

○ 운영방식

- 탐나는인재는 주 5일 참여기업 근무, 분기별 1회 센터 출석
- 기업 담당자의 관리 아래 현장 실무를 수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 기업 역할

- 탐나는인재와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월 급여 지급, 기업지원금 정산 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턴십 운영

○ 기업지원금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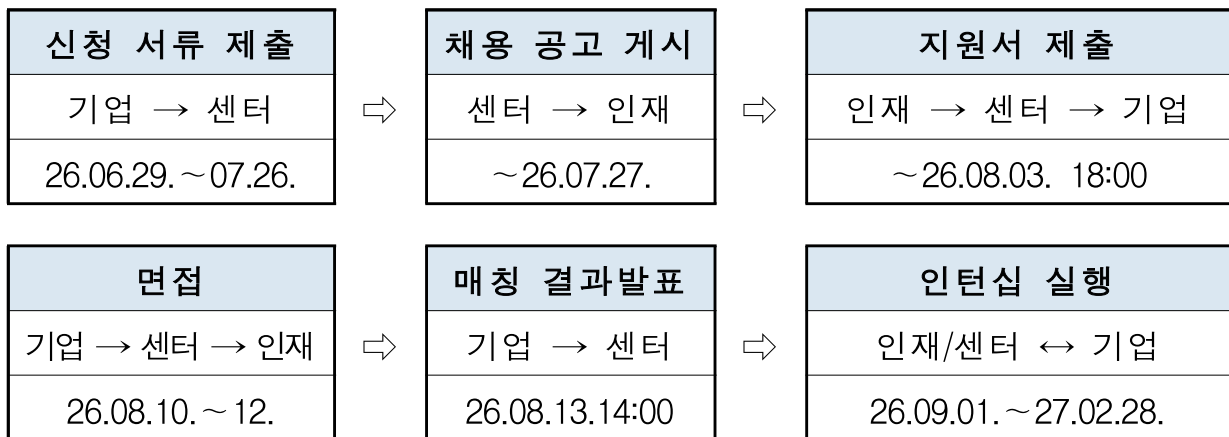
- 기업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지급일에 매월 급여*를 선(先)지급하며, 3개월(분기) 단위로 후(後)정산

※ 월 급여 수준: 인턴십 참여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2026년 기준 월 2,530,990원 이상)을 참여자에게 선지급하여야 하며, 센터는 인당 월 150만원을 후정산으로 지급.

기업지원금	+	기업 자부담금	=	월 급여액(기본급)
월 1,500,000원		월 1,030,990원 이상		2,530,990원 이상

※ 단, 기본급을 제외한 매월 비교정급(초과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등)과 4대 보험 기업 부담금은 별도 부담

○ 인턴십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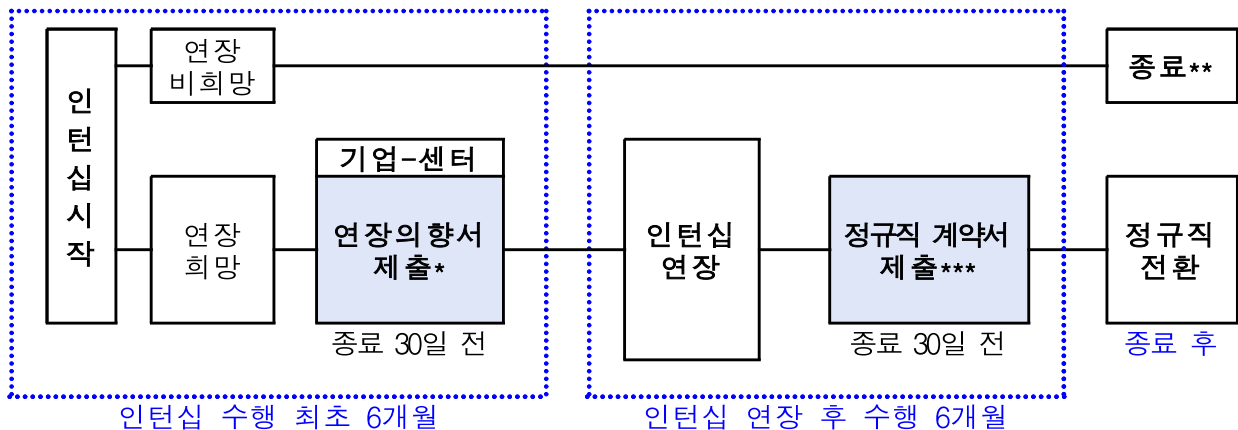
- 1) 지원서 제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인재가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제출
(서류 결과 기업→센터 회신 기한: 26.08.05. 오후 14시까지)
- 2) 면접 진행: 면접은 해당 기간에 한해 진행 가능하며, 면접 직후 결과 회신 요청

(면접 결과 기업→센터 회신 기한: 26.08.13. 오전 10시까지)

- 3) 매칭 안내: 합격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매칭이 진행됨.
이 과정에서 센터는 인위적으로 개입(맞춤형 매칭 제안 등)하지 않으며,
단순히 지원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으로 자동 매칭되는 것은 아님.

○ 인턴십 절차 및 연장조건

- 연장조건: 인턴십 기간 연장은 최초 인턴십 참여 시점에 해당 참여자의 지원 잔여기간이 12개월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연장절차: 인턴십 종료 30일 전, 연장의향서 제출



- * 연장의향서 제출: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추가 6개월 연장 의사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연장 종료 직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을 조건으로 함. 연장기간 동안은 계약직을 유지하며, 총 12개월까지 지원 가능(공공기관·공기업 전환은 제외)
- ** 종료: 인재와 기업이 추가 6개월 연장을 비희망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인턴십 운영 협약서의 계약기간에 맞춰 종료함. 인재는 인턴십 기간 중 타 기업 매칭을 위한 일정(면접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예정 참여자는 타 기업으로 매칭 절차를 진행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동일한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함.
- *** 정규직 계약서 제출: 연장하는 기업은 인턴십 연장기간 종료 시점에 탐나는인재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해야 하며, 연장 종료 30일 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계약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함. 이때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일자는 연장기간 만료 직후로 하며, 급여조건은 인턴십 급여 수준 이상 또는 상호 합의한 수준으로 설정함.

□ 참여기업 요건 및 제한기준

1. 개인사업장 중 간이과세 사업자
2. 지원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 단,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탐나는인재가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일에는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지원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타 탐나는인재를 채용한 후에는 즉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3. 지원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고용유지지원금 등)가 실시 중인 사업장
 - ※ 단, 인턴십 채용기준일 이전 고용유지 조치(고용유지지원금 등)가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4.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5. 지원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6. 부정수급 등(타 보조금 사업 포함)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7. 채용하는 기업의 대표자(고용주)가 탐나는인재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 센터가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제출
8.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나,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 불가
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장
10.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ex.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11.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ex.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 단,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외근이 필요한 업무(영업관리, 마케팅 등)는 가능하나 단순히 영업을 위해서 상시 외근만 하는 업종은 지원 불가
12. 기타 사회통념상 탐나는인재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 ** 단, 탐나는인재의 진로상 필요하고 연관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가능
1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14. 본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금지 통보를 받은 기업

□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6년 7월 26일(일)까지**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이메일 제출(hxxzm@jdnc.or.kr)
- 문의처: 제주더큰내일센터 취업팀(064-720-8913)
-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표 참고

※ 아래 서류는 반드시 각 1부씩 개별 PDF 파일로 제출(①~②제외)

구분	제출서류
인턴십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첨 1) 인턴십 채용공고 등록 신청서 1부 ② (별첨 2) 자격 확인 및 사업자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p>* 도내·외에 사업장이 모두 있는 경우, <u>소재지별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제출</u>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p><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개자료(PDF 등) * 기업소개자료 : 내부 공고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영상자료 : 용량 관계로 온라인 링크 제출(홈페이지·유튜브 등)

※ 본 공고에 참여한 기업은 최종 매칭 결과를 기준으로 ‘탐나는 기업’으로 일괄 등록·관리됨.

□ 프로그램 운영 유의사항

인턴십(실무 기반형 인턴십/주 5일 근로 계약)

(1) 신청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탐나는기업'으로 등록·관리됨
- 「인턴십 참여기업 제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2) 참여기업과 탐나는인재의 관계

- 탐나는인재는 센터 교육생이자 기업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인턴십에 참여함, 기업은 경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와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 기업은 센터 및 탐나는인재와 3자 협약을 체결함

(3) 센터지원금 및 인턴십 급여 지급

- 기업은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탐나는인재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센터지원금은 기업이 급여를 선(先)지급하고, 분기별 정산서류 제출에 따라 센터가 후(後)정산으로 지급함
 - * 세부 신청방법은 추후 참여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탐나는인재의 급여는 센터지원금(150만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 2026년 생활임금 : 월 2,553,990원
(센터지원금 1,500,000원 + 기업 부담 1,053,990원 이상)임
 - ** 생활임금 산정 : 12,110원 × 209시간 = 2,553,990원임
 - ※ 급여기준은 기본급 기준임.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만 포함됨. 매월 비고정적이거나 비일률적인 수당(초과수당, 휴일수당 등) 및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 금액은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됨. 4대 보험(기업부담분)은 별도 기업 부담임.

(4) 인턴십 기간(근로계약기간)

-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로기간 : 6개월(연장 6개월 시 최대 12개월)임
 - * 주 5일 근무 / 분기 1회 센터 출석임
 - ※ 최초 6개월 종료 30일 전, 추가 연장의사를 협의·제출해야 하며, 연장조건은 연장 종료 시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임
 - ※ 연장 시 총 12개월까지 진행 가능하며, 연장 종료 30일 전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제출해야 함. 정규직 전환일은 연장기간 만료 직후로 함. 급여는 인턴십 급여 수준 이상

또는 상호 합의한 수준으로 설정함.

(5) 안전 관련

- 기업은 법정 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질병·성희롱 발생 시 센터에 통보해야 함
- * 업무상 재해, 출산·육아휴직 등의 요양기간은 지원기간 내 근무로 인정함
 - ※ 단, 별도 급여 지원을 받거나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은 센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기타 근로조건 준수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함
- *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함
- * 근무장소 : 근로계약서에 명시함
 - ※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는 불가함.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로 공공장소(회사 등)에서 근무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 방침에 따른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사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함

(7) 기업 변경신고

-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경미한 변경은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 인수·합병 등 중대한 변경은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만 인정됨
 - ※ 고용관계 유지 여부 및 근로조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함
- 변경신고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함

(8) 지원 종료

- 기업 또는 탐나는인재가 연장을 비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지원종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기간 내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턴십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 위반 사실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과 「센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름. 해당 기업은 동 사업 2년간 참여 금지됨.
- 이외 사항은 3자 협약서, 「근로기준법」, 「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해석상 분쟁 발생 시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탐나는인재 근무조건 변동(부서이동, 퇴사 등) 발생 시 기업은 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